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인증·승인 등 수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28. ~ 8. 7.)

부령 제 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

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목재문화진흥회는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5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은 법 제42조제3호의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격관리 수탁기관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5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제2호의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등 정보전달 기능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4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허가·인증·검사, 평가, 정보제공, 교육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수수료) ① (생략) ② 삭제 <u><신설></u>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③ ~ ⑤ (생략)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드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u><단서 신설></u>	제16조(수수료) ① ----- ----- ----- ----- ----- -----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략)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다만, 목재문화진흥회는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31조(수수료) ① ----- ----- ----- -----. 다만,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은 법 제42조제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단서 신설>	제48조(수수료) ----- ----- ----.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 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 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 ----- ----- ----- ----- .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11(수수료) ① (생략)	제14조의11(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u>. 다만,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수수료) ① ~ ④ (생략)	제30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4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 제5항까지----- ----- ----- ----- ----- ----- ---
1. ~ 4.(생략)	1. ~ 4. (현행과 같음)